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해제(일몰) 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5. 8. 9.
변경 (연장)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7. 8. 8.

2.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7)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02-330-16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